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가. 발 의 자 : 한명희 의원 외 12명

나. 의안번호 : 제1941호

다. 발의일자 : 2017. 7. 27

라. 회부일자 : 2017. 7. 28

2. 제 안 사 유

-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폐현수막 등의 재활용 촉진을 통한 폐기물 감량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서울시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 ‘폐현수막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비닐봉투 사용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폐현수막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소 등에서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함(안 제1조~제6조, 안 제8조~제9조, 안 제12조~제13조)

4. 참 고 사 항

가. 관련법령 :

- 「폐기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 해당부서와 협의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폐현수막 등의 재활용 촉진을 통한 폐기물 감량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서울시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 폐현수막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비닐봉투 사용 현황

- 현재 대규모 점포, 도·소매 사업장(면적 33㎡이상)에서 비닐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비닐봉투 사용량은 증가 추세에 있음.

〈비닐봉투 사용량 추이〉

(단위: 억개)

연도	2003년	2008년	2013년	2015년	비 고
사용량	125	147	191	216	

또한, 최근¹⁾ 서울시 4개 자원회수시설 반입쓰레기 성상 조사결과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속 내용물 중 비닐·플라스틱류가 1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비닐봉투 사용량 추이〉

(단위: %)

계	종이류	비닐·플라스틱류	섬유·피혁류	음식물	불연물, 기타
100	36.6	17.6	14.5	8.9	22.4

1) '17.1월 ~ 6월

2) 폐현수막 발생 및 재활용 현황 등

- 2016년 기준 연간 폐현수막 발생량은 약 77만장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약 30%는 장바구니, 마대자루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조각이나 매립처분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서울시는 폐현수막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자동차 정비업협회, 재활용업체 간 3자 간담회('16.8월)와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2)('17.5월) 등을 통하여 폐현수막 재활용 제품을 소개하고 사용을 적극 요청해 오고 있음.



〈폐현수막 재활용 제품 현황〉

2017년 현재 서울시 소재 폐현수막 등 재활용 업체는 녹색발전소, 터치

2) 청소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 낙엽 마대자루, 재활용정거장 마대자루, 수방용 모래주머니로 이용
환경과 : 자동차 정비공장, 세차장, 공사장 등에서 폐기물 마대자루로 이용

포곳, 대길사회복지단, 도봉실천단이 있으며, 강서, 구로, 서대문구 등 11개 자치구에서만 재활용 제품이 사용되고 있어 다른 자치구로의 사용 확대가 요망된다 할 것임.

- 한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16.7.7)으로 불법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단속 권한이 시·도지사에게도 주어졌으며, 이에 서울시는 거리상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을 자치구와 합동 점검·단속하는 '불법 현수막 기동정비반'을 운영('17.7.12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서울시의 불법 현수막 근절 의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간 적발된 불법 현수막 중 약 70%가 구청 등 공공기관에서 내건 것으로 파악³⁾되고 있는 바, 불법 현수막 근절을 통한 폐현수막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⁴⁾과 보다 적극적인 시정 조치가 필요할 것임.

3) 폐현수막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 제공(안 제10조제3항 신설)

- 재활용 장바구니 등의 사용은 비닐봉투 사용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게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⁵⁾에 따른 “폐기물 감량·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위한 시책”과 부합한다 할 것이며,

3) KBS 뉴스 보도('17.8.11)

4) 민간단체나 기업이 불법 현수막을 내걸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구청에서 내건 불법 현수막은 단속 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임.

5) 제10조(시민참여) ① 시장은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시민 또는 시민단체의 참여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및 적정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또는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정보·기술·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안 제10조제3항 신설을 통해 서울시가 폐현수막 등으로 제작한 장바구니 등을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재활용 활성화 및 비닐봉투 사용 억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재활용 장바구니가 폐현수막뿐만 아니라 펠트⁶⁾ 등으로도 제작되고 있는 바, 재활용 장바구니 등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제3항 중 “폐현수막”을 “재활용가능자원”으로 수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더불어,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재활용 장바구니(소형)의 경우 일반 제품에 비해 디자인 및 품질 등이 떨어져 이용되지 않고 버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장바구니 디자인 및 품질 개선도 필요할 것임.

- 한편,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폐현수막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의 제공”에 대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임(선관위 질의회신, '17.8.7).

4)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

-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오타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6) 양모 또는 양모와 다른 섬유와의 혼합 섬유를 가온 압축하에서 문질러 양모의 축융성에 의해 섬유가 얽혀서 된 피륙을 말하며, 페펫병에서 추출한 물질을 이용하기도 함.